

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-39호

『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아파트지구(2주구)
정비계획』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 8. 21)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89호(2007.08.23.)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
고시 제2017-32호(2017.04.20.)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 결
정된 서초아파트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와 「주택법
(법률 제6916호)」 부칙 제9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법률 제6852호)」
부칙 제5조 제3항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
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을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
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
고시 합니다

2017년 04월 27일

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

1. 아파트지구개발계획의 명칭·위치 및 면적

가. 명칭 : 서울특별시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아파트
지구 2주구 정비계획 변경

나. 위치 : 서초구 서초동, 반포동 일대

다. 면적 : 1,187,271.0m²

구분	정비구역명칭	위치	면적	비고
기정	서초아파트지구	서초동, 반포동 일대	1,187.271.0m ²	

2. 주요 변경내용 (서초아파트지구 2주구 내 서초삼호1차아파트)

가. 서초삼호1차아파트 정비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면적 (㎡)	비율(%)	비고
계	39,964.2	100.00	
주택용지	35,120.5	87.9	
공원	1,513.1	3.78	
완충녹지	3,324.4	8.31	
도로	6.2	0.01	

나. 변경사유서

구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완충녹지	상호선형조정	공유물 분할소송 결과 및 토지 분할에 따른 상호선형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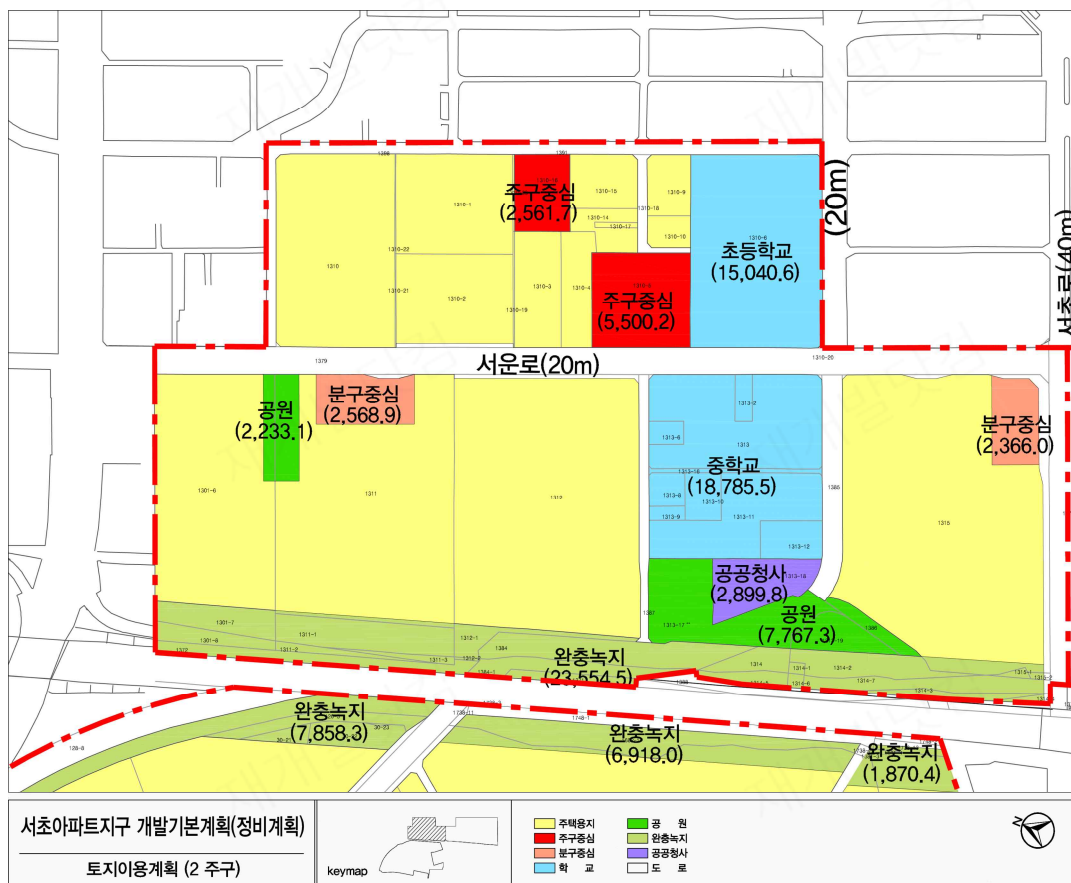
3. 관계도면

-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아파트지구 2주구 정비계획
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(참조 : 붙임)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)은 참고용
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구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02-2155-7342) 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[변경 전]



[변경 후]

